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컨벤션센터 건립·운영에 관한

업 무 협 약 서

강릉시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(이하 “협약 당사자” 라 한다)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·발전을 위해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컨벤션센터 건립·운영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컨벤션센터 건립·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·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사업개요) 본 협약대상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
- ① 명칭: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컨벤션센터 건립(이하 “본 사업” 이라 한다)
- ② 위치: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내
- ③ 규모: 8,000㎡(연면적) / 351억 3천만 원

제3조(협약사항) 본 사업에 관한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건립비용 311억 3천만 원은 국고로 부담하며,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(교육부)로 한다.
- ② 강릉시는 향후 4년간(2024년~2027년) 건립비용 40억 원을 지원한다.
- ③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사업시행 주체로서 컨벤션센터 내에 강릉시청 전용사무공간(100㎡내외)을 마련하고, 강릉시(지역사회)에서 시설을 대관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우선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.
- ④ 컨벤션센터 내에 강릉시와 대학 및 유관기관 간 상생·교류할 수 있는 공간(80㎡내외)을 마련한다.
- ⑤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⑥ 기타 협약당사자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대학의 상생·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서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.

제4조(상호협약)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사항 이행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6조(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서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협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이행 및 해석) 각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기타사항) 본 협약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와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업무협력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상호 교환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월 3일



시장 김홍규

김홍규



총장 반선섭

반선섭